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1·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1·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6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2. 위 치 : 서구 연희동 741-14, -15번지 및 심곡동 325-9번지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- 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기 정					변 경				
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위치	면적 (㎡)				위치	면적 (㎡)	
1-18	9,922.6	5	188.4		1-18	9,922.6	5	338.0	
		6	149.6						
1-28	12,720.8	8	1,581.5		1-28	12,720.8	8-1	774.2	
							8-2	807.3	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 치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1-18	5, 6 → 5	획지합병	효율적인 토지이용
1-28	8 → 8-1, 8-2	획지분할	효율적인 토지이용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
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

